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00
------	------

2025. 9.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11일, 김형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9.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김태희)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특정 장르인 ‘음악축제’로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후원 및 상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

나. 축제 지원 가능 분야 범위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및 서울특별시시장 명의 상장 추가 (안 제16조 제4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된 ‘음악축제’라는 표현을 ‘축제’ 또는 ‘대표축제’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육성 및 지원 대상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더불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축제는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 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음.

(2) 개정안의 타당성

① 축제 용어 정비(안 제4조 및 제6조)

- 안 제4조는 시장이 개최하는 축제 및 육성·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 축제가 음악 장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축제’로 정비하는 내용임.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4조(축제의 개최)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히 장르별·계절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음악축제를 연중 개최하거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음악축제를 적극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축제의 개최) ----- ----- ----- 축제 ----- ----- 축제 ----- -----.

- 안 제6조제5호 또한 위원회의 자문이 특정 장르 축제에 국한되지 않도록 표현을 정비함과 동시에, 개발 및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하는 안건을 ‘대표축제’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음악축제의</u> 개발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u>대표축제</u>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동 조례는 개정 대상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89건) ‘축제’라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으며, 조례의 목적(제1조) 및 정의(제2조) 조항을 고려한다면 동 조례의 취지가 문화예술 축제 전반에 걸쳐 육성 및 지원하려는 것임은 명백해 보임.

<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u>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u>축제</u> "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시민화합, 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u>문화적·예술적·민속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을</u> 말한다.

- 조문의 맥락상 현행 제4조 및 제6조제5항에서 음악 장르를 특별히 취급하고자 하는 의미로 ‘음악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또한, 서울시 축제 및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치구·민간 축제는 이미 음악뿐만 아니라 전시·연극·무용·오페라·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어 현실 적합성 측면에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양한 장르의 서울시 개최 및 서울시 지원 축제 예시 >

○ 서울거리예술축제(시 대표축제)

- 야외에서 펼쳐지는 극, 무용, 마임, 서커스, 연희, 오페라, 발레,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순수예술, 비상업적 예술 공연

○ 서울시 지원 축제

- 2025 단오맞이 K-국가무형유산축제(전통예술, 전시)
- 2025 서울 어린이 오페라 페스티벌(오페라)
- 2024 SICF 서울 국제 안무 페스티벌(무용)

②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안 제16조제4항)

- 안 제16조제4항은 시장의 지원을 받는 축제가 서울시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시장 명의를 상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임.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 ③ (생략)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 시장 명의의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은 제외한다.

1. 단순 이벤트성 공연 행사

2. 정치목적의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3. 과도한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행사

4.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부조리(후원 명칭 사칭)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5. 예술 경연 대회 상장 지원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연 대회 운영 규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 대회

6.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예술 경연 대회

7. 과거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서류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단체 내 소송 등 민원이 진행 중인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 서울시는 행정국 총무과에서 수립한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업무지침」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등에 따라 각종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수여를 지원해왔으며, 2014년, 문화본부(당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문화예술 행사에 특화된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수여 승인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오늘날(2025. 7. 개정)까지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지침에 따라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축제는 이미 후원명칭 사용과 시장 상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본문은 두 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음.

- 안 제16조제4항의 단서는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현행 지침의 내용과 부합하여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각 호에서 지원 제외 대상을 세부적이고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만큼, 대상의 추가 혹은 변경 등을 위해서는 잦은 조례 개정이 요구될 여지가 있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0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김형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서상열, 소영철,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황유정, 황철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특정 장르인 '음악축제'로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후원 및 상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
- 나. 축제 지원 가능 분야 범위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및 서울특별시시장 명의 상장 추가 (안 제16조 제4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음악축제”를 각각 “축제”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음악축제”를 “대표축제”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은 제외한다.

1. 단순 이벤트성 공연 행사
2. 정치목적의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3. 과도한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행사
4.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부조리(후원 명칭 사칭)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5. 예술 경연 대회 상장 지원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연 대회 운영 규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 대회
6.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예술 경연 대회
7. 과거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서류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단체 내 소송 등 민원이 진행 중인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축제의 개최)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히 장르별·계절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u>음악축</u> <u>제</u> 를 연중 개최하거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u>음악축제</u> 를 적극 육성 ·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축제의 개최) ----- ----- ----- ----- <u>축제</u> ----- ----- --- <u>축제</u> ----- -----.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음악축제</u> 의 개발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u>대표축제</u> -----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 ③ (생 략)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u>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은 제외한다.

1. 단순 이벤트성 공연 행사

2. 정치목적의 행사 또는 단체
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3. 과도한 참가비 등을 부담하
게 하는 행사

4.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부조
리(후원 명칭 사칭)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
가 있는 행사.

5. 예술 경연 대회 상장 지원 등
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연 대
회 운영 규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 대회

6.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
이 없는 예술 경연 대회

7. 과거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
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킨 경우

8. 서류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단체 내 소송 등 민원이 진행
중인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4조(축제의 개최)의 음악축제를 축제로 변경한 것으로 축제 지원분야 확대에 따른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 문의하였으나 기존에도 음악축제 외 축제에 지원하고 있는 것 (기추진 사업¹⁾)으로 확인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문화본부 2025년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 9,699,500천원

⇒ 음악축제 외의 축제(서예, 미술, 무용 등) 또한 기지원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음악축제에서 축제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